

#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교육)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47조(과태료)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. 5. 13.

사 천 시



- 제 목 :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 : 2024. 5. 13. ~ 2024. 5. 27.(15일간)
- 처분대상 및 내용

업종	업소명	소재지	대표자	처분사유 (위반내용)	처분내용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	이오스타그린점	사천시 사천읍 사주2길 44, 황후빌 202호	한*아	2023년 안전위생교육 미수료	과태료 20만원

#### 4. 법적근거
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7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#### 5. 고지사항

-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, 이후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.
-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6. 문의처 :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(☎ 055-831-3619)